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026. 9.

1. 계획의 개요

1.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은 정책계획으로서 지정 제7차 관광개발계획 만료에 따라 부산권의 변화된 정책환경을 고려한 관광개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단위로 수립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구체화한 계획임.
- 이전 권역 개발계획 연계를 통해 부산 지역특성을 살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의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토대 마련
- 계획의 목표
 -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존형 도시관광
 - 머무름과 소비가 확대되는 체류경제형 관광
 - 바다·도시·자연이 연결되는 입체형 관광
 - 광역연계·AI 기반의 미래형 관광

1.2 계획의 추진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22조제2항〔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에 해당되며 협의요청시기는 <표 1-1>과 같음.
-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정책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마. 관광단지의 개발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 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

1.2.2 정책계획의 추진근거

-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추진

〈표 1-2〉 계획의 추진근거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권역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자료: 관광진흥법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2026.02~06 : 대상사업 취합 및 기초자료 검토(72개 사업)
- 2026.02.04 : 부산시 16개 구·군 담당자 권역계획 설명회
- 2026.07 : 민선 9기 정책방향 반영 수정자료 재취합(65개 사업)
- 2026.07 : 제출자료 세부검토 및 보완 재요청
- 2026.07 :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 및 1차 조정(38개 사업)
- 2026.07~08 : 사업구조 조정 및 보완, 최종 대상사업 선정(38개 사업 확정)

나. 향후 계획

- 2026.09 : 평가협의회 심의(서면) 개최
- 2026.09~10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계획수립기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
- 2026.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1.4 정책계획의 내용

1.4.1 계획명 및 계획수립 주체

- 계획명 :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 계획수립권자 : 부산광역시

1.4.2 정책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7년~2031년(5년)
- 기준연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31년

나.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항만·어항구역
- 면적 : 총 771.33km²(15구·1군, 4읍·1면·200동)
- 인접지역 간 기능적으로 연계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그림 1-1) 부산광역시 공간적 범위

다. 계획의 내용

1)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소권 설정

가) 3+3+2 공간 체계 설정

○ 3대 관광권

- (동부산관광권)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운대·송정 해안관광자원, 기장 산림·휴양자원을 기반으로 해양관광·휴양·복합레저 기능 강화
- (중부산관광권) 북항·원도심과 동래·금정의 역사문화자원, 주요 도심 관광거점을 연계하여 역사·문화·상업·도시관광 기능 강화
- (서부산관광권) 낙동강·울속도·다대포 등 생태·수변자원과 서부산 개발거점을 연계하여 생태·휴양·수변관광 기능 강화

○ 3대 Core

- (낙동강 Core) 낙동강 수변과 생태·생활자원을 활용한 내륙형 관광거점 육성
- (다대포 Core) 낙동강 하구와 서부해안의 생태·해양자원을 활용한 서부산 관광거점 육성
- (영도 Core) 태종대의 해양경관과 자연·레저자원을 활용한 중부산 남측 해양관광거점 육성

○ 2대 관광 연계권

- (해양관광연계권) 부산의 해안·항만·도서·마리나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레저·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의 해양관광 영역 확대
- (초광역관광연계권)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경남 등 인접 지역의 관광 자원과 광역 관광 사업을 연계하여 동남권 관광 동선과 체류 범위 확대

나) 연계체계·연계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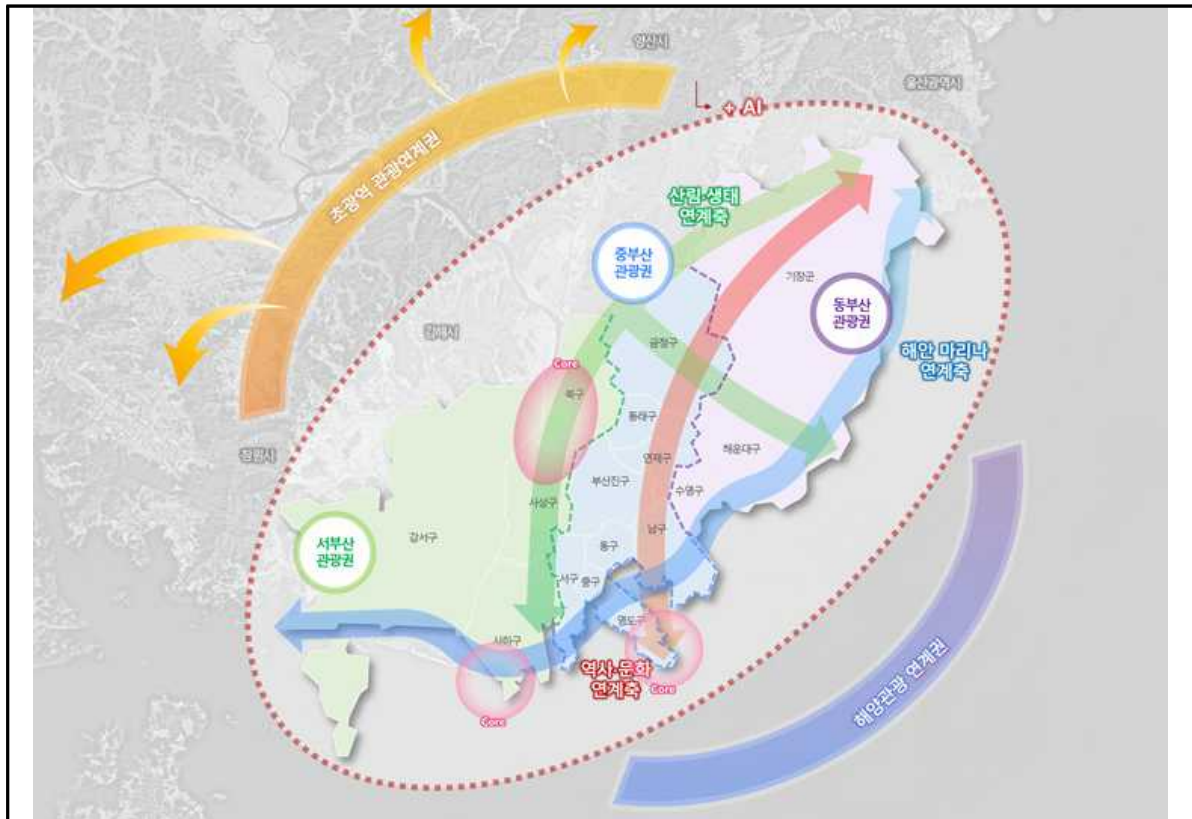
○ AI 기반 관광 체계

- 3+3+2 관광 공간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AI·데이터 기반 연계 체계를 설정하여 분산된 관광 자원과 거점을 하나의 이용 체계로 연결하고 관광 정보·이동·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지원

○ 관광 자원 연계축

- (해안·마리나 연계축) 기장·해운대·광안리·북항·영도·다대포 등 주요 해안 및 해양관광 거점을 연계하여 해양·마리나 관광 기능 강화
- (산림·생태 연계축) 기장 산림자원, 금정산, 낙동강 및 서부산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산림 휴양·생태관광 기능 강화

- (역사·문화 연계축) 동래·금정역 전통문화자원과 원도심·영도의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역사·문화 관광 경험 확대



(그림 1-2)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소권

2.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의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1/2)

평 가 항 목			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계획의 적정성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국가 환경정책	부산광역시 전역	○ 관광개발계획 수립시 국가환경 정책 및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등 고려여부 검토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산광역시 전역	○ 관광개발계획과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해당계획 목표와 내 용의 일관성 검토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부산광역시 전역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차원의 공간계획 수립여부 검토 ○ 관광개발계획의 수요·공급에 대 한 적정성 검토 ○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여부 검토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부산광역시 전역	○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 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보호지역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부산광역시 전역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산림 축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 전역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 관 지역 등 경관관련 보전지역 검토
		수환경의 보전	부산광역시 전역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표 2-1 계 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2/2)

평 가 항 목			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부산광역시 전역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의 적정수립 여부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부산광역시 전역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부산광역시 전역	○ 자원·에너지의 효율적인 순환계 획 수립여부 검토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부산광역시 전역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여부 검토

2.2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2.2.1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2항 관련〔별표2〕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 중 사업 및 지역의 특성과 환경영향요소 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표 2-2〉 평가항목 선정

구 분			선정구분		선정사유
			평가	제외	
계획의 적정성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수립 전·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계획수립 시 영향이 예상되는 동·식물상의 서식 환경 변화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	•주요 산줄기 검토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	•경관자원 현황 파악 •경관기본계획 검토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	•문헌조사를 통한 환경현황조사 •계획수립 시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해양환경	○	-	•계획수립 시 주변해양에 미치는 영향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	•대상지역의 기상 현황 파악
		대기질	○	-	•문헌조사를 통한 환경현황조사 •계획수립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검토
		악취	-	○	•악취유발시설 계획 없음
		온실가스	○	-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정책 검토
		토양	○	-	•대상지역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소음·진동	○	-	•문헌조사를 통한 환경현황조사 •계획수립 시 소음·진동 발생 검토
		위생공중보건	-	○	•건강영향평가항목의 평가 대상사업에 미해당
		전파장애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전파장애 요인 없음
		일조장해	-	○	•계획 수립단계로 건축계획 미수립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	-	•대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	•대상지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사업 시행 시 발생 폐기물 적정 처리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검토
		인구주거	○	-	•대상지역의 인구 및 주거현황 파악 •계획수립 시 인구, 주거 변화 검토
		산업	-	○	•계획 특성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미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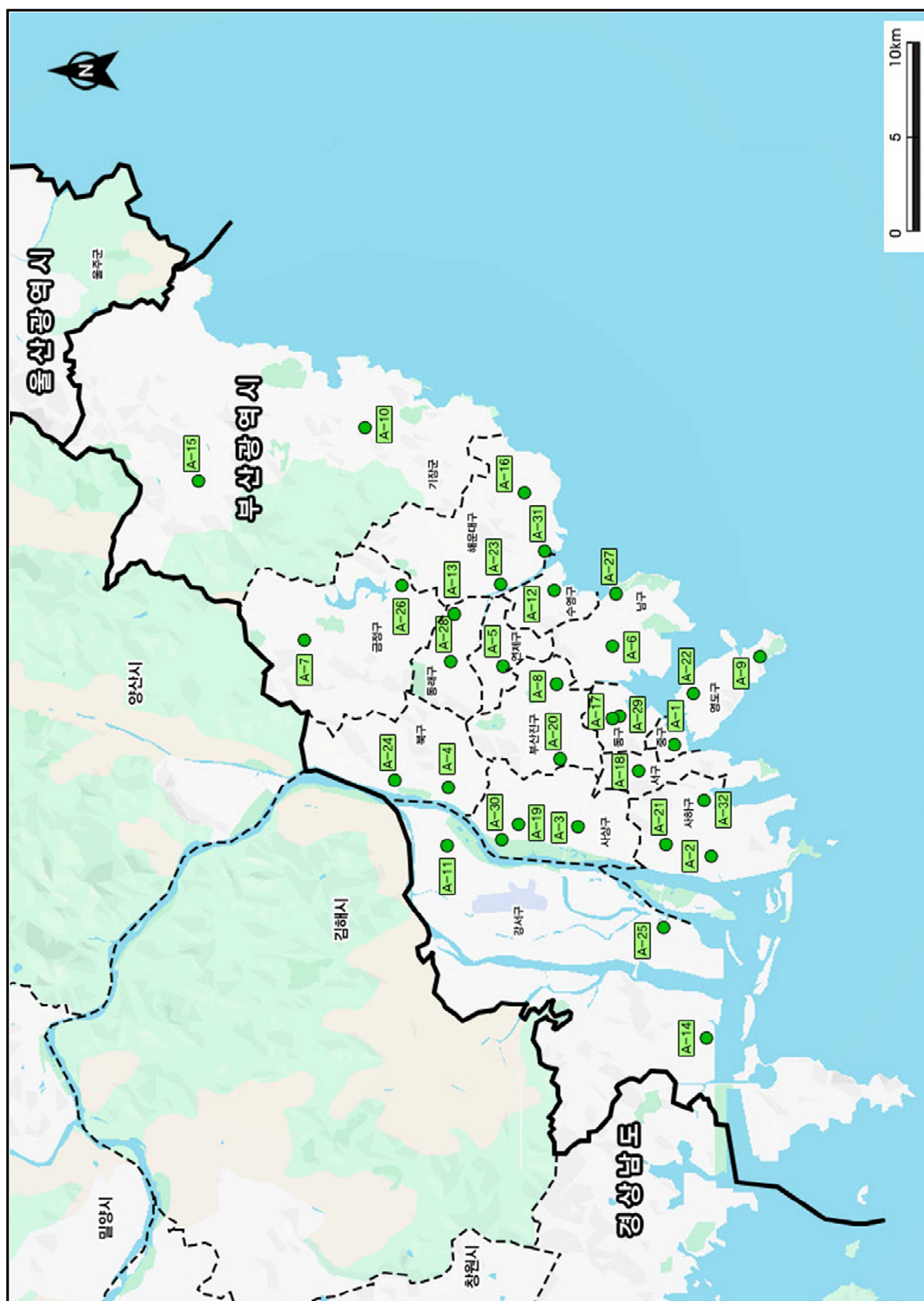
2.2.2 환경현황 조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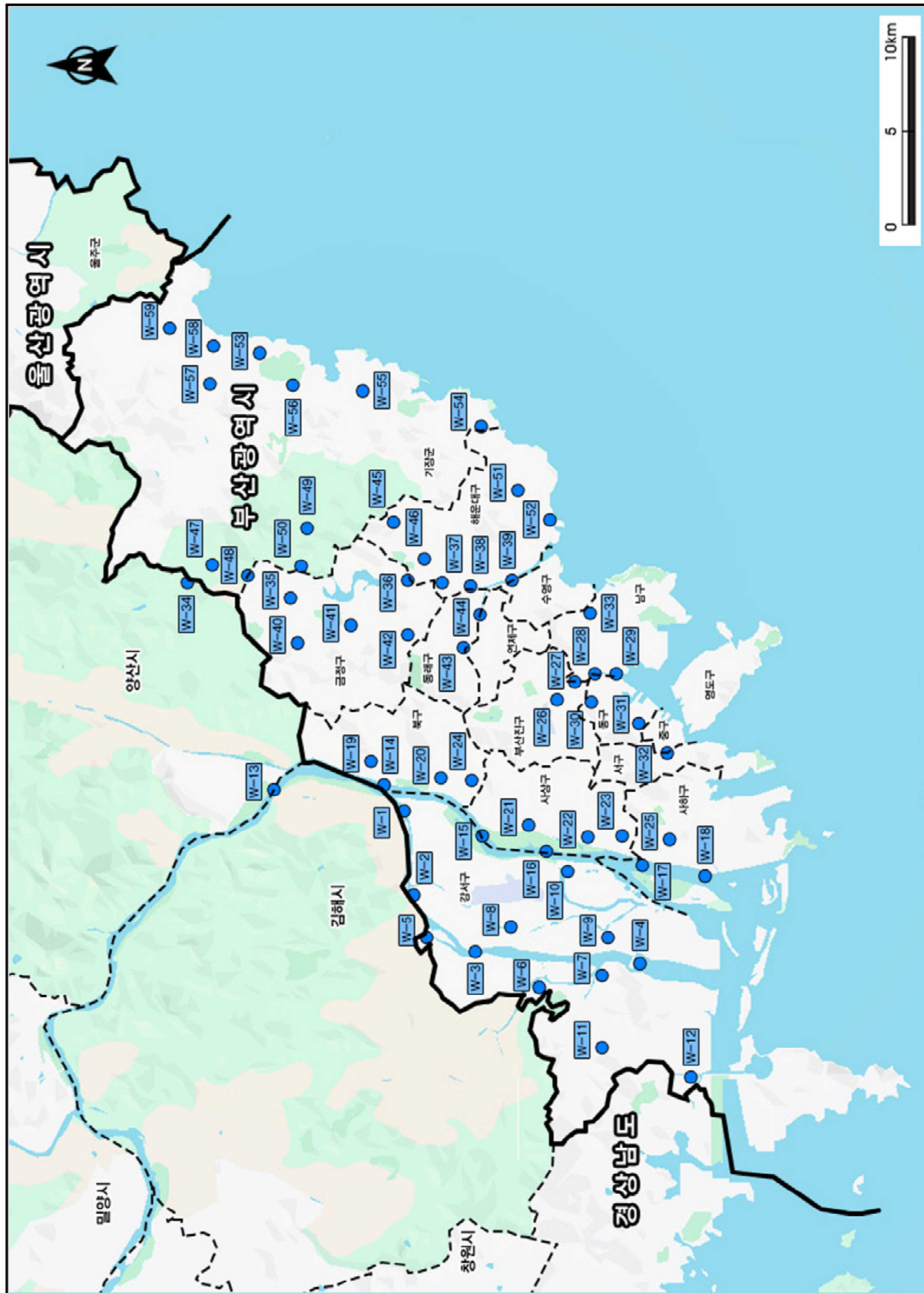
-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측정망 자료로 구 및 군별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사업시행 전·후 환경변화)와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계획하였음.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함.

〈표 2-3〉 환경현황 조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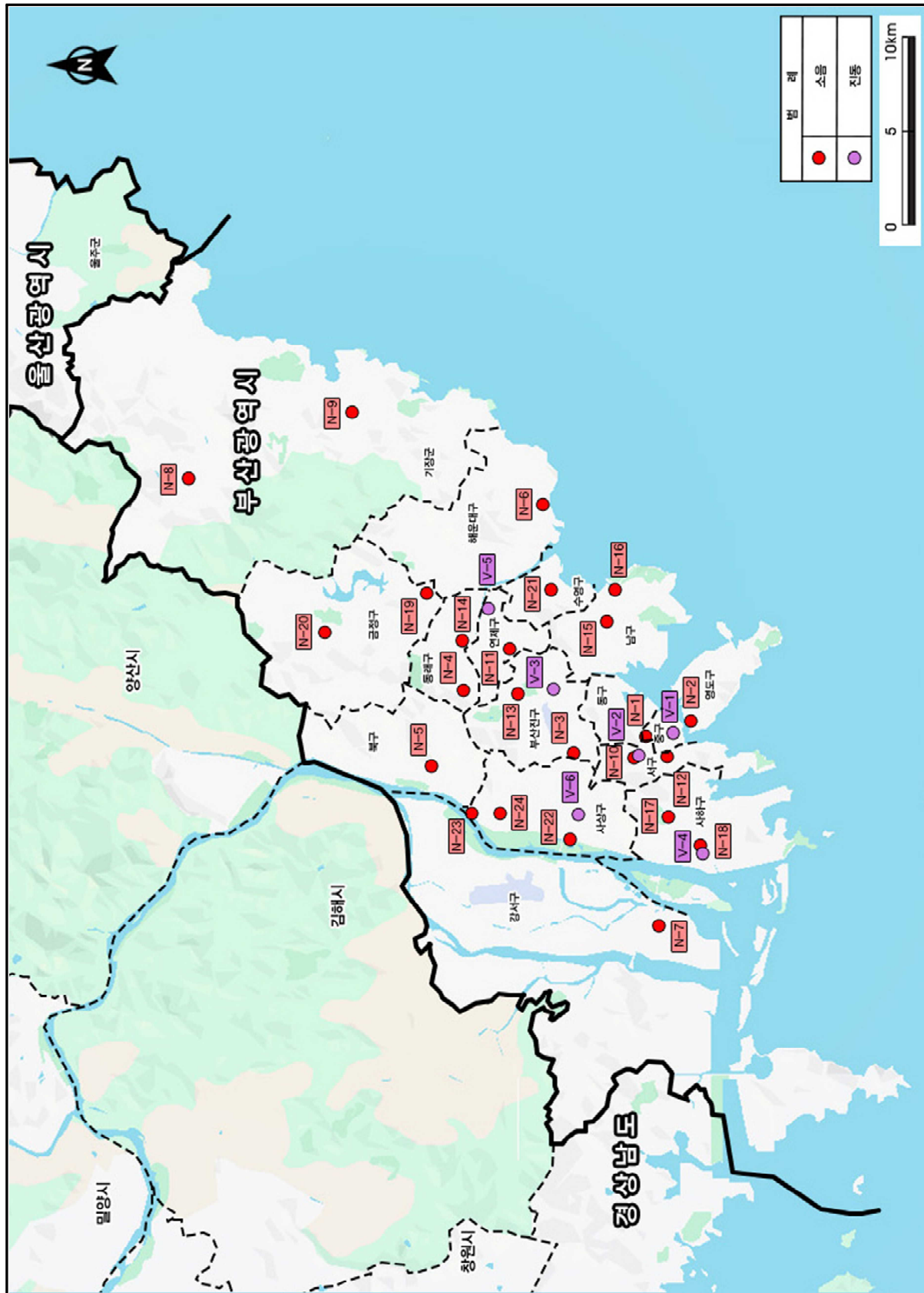
구 분	조사항목 (항목수)		지점수	비 고
육상생태계	○ 육상 동·식물상	-	부산광역시 전역	문헌조사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대기질	○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6	32	문헌조사 (측정망 활용)
하천수질	○ pH, 수온, DO, 전기전도도,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 ₃ -N, NO ₃ -N, 총인, DTP, PO ₄ -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클로로필a, 염분	19	59	문헌조사 (측정망 활용)
해양수질	○ pH, 총대장균군, DIN, DIP, Chl-a, 투명도, 저층산소포화도, Cu, Pb, Zn, As, Cd, Ni, COD, T-N, T-P, DO, 수온, 전기전도도, 염분	20	30	문헌조사 (측정망 활용)
소음	○ 주간 및 야간 소음도	1	24	문헌조사 (측정망 활용)
진동	○ 주간 및 야간 진동도	1	6	문헌조사 (측정망 활용)
토양	○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류,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19	18	문헌조사 (측정망 활용)
			15	문헌조사 (토양오염 실태조사)

주) 제시된 지점수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측정망 자료로 추후 작성 시점에 따라 지점수 변동이 가능하며, 구 및 군 별로 지점을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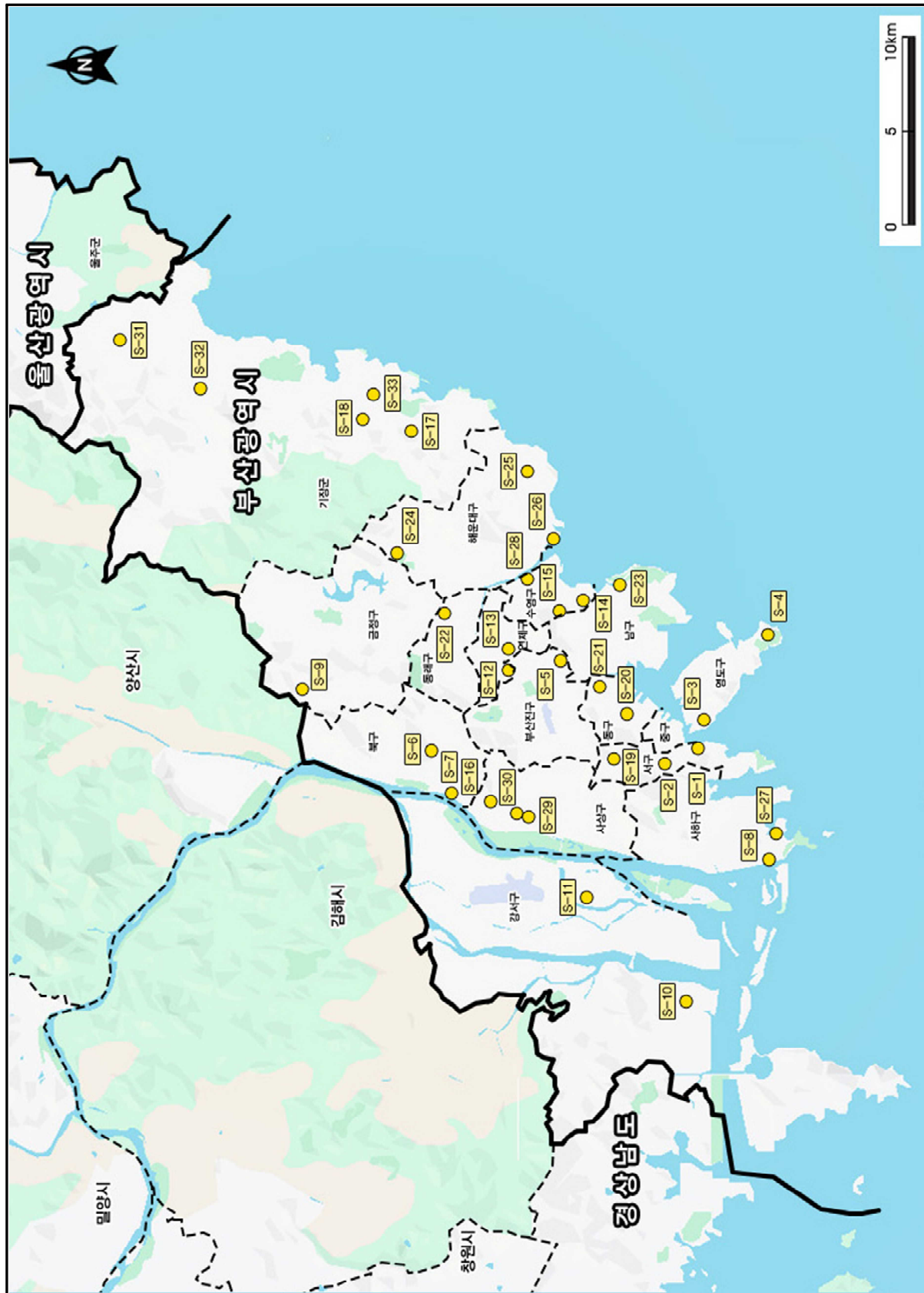




(그림 2-2) 조사지점도(하천수질)



(그림 2-3) 조사지점도(소음·진동)



(그림 2-4) 조사지점도(토양)



(그림 2-5) 조사지점도(해양수질)

2.2.3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결정된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표 2-4>와 같음.

<표 2-4> 평가항목별 평가범위·방법

구 분		현황조사·평가 범위		현황조사·평가 방법	
계획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동·식물 및 자연환경자산의 파악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지구	•문헌조사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자연환경보전법 검토 및 경관자원 현황 파악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계획지구 주변수계, 계획지구 주변해역	•문헌조사 •수환경(해수 포함) 및 수자원 등의 파악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최근 10년간의 기상현황 분석	
		대기질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개별계획 수립시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 요인 검토	
		온실가스	계획지구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온실가스 저감 법령 및 대책 검토	
		토양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토양오염 현황조사 •개별계획 수립시 발생 가능한 토양오염 요인 검토	
		소음·진동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개별계획 수립시 발생 가능한 소음·진동요인 검토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계획지구	•문헌조사 •대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지구	•문헌조사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시설조사 •개별계획 수립시 폐기물 발생요인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 검토 •계획수립 시 토지이용의 변화 검토	
		인구·주거	계획지구	•계획수립 시 인구, 주거 변화 검토	

주) 계획지구 : 부산광역시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본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개최하였음.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6.09.07. ~ 2026.09.17
- 협의회 위원 : 총 9인(위원장 포함)

구 분		소속 및 직책	성 명	비 고	의견제출 여부
1	위원장	부산광역시 관광정책과장	이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
2	위 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방 ○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
3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주 ○ ○	협의기관 추천 민간 전문가	○
4	위 원	부산광역시 생태지질팀장	한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
5	위 원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김 ○ ○	위원장 위촉 민간 전문가	○
6	위 원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이 ○ ○	계획수립기관 추천 민간 전문가	○
7	위 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추천 해양관련전문가	○
8	위 원	부산환경운동연합	노 ○ ○	시민단체	○
9	위 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부위원장	조 ○ ○	주민대표	○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기존 관광지 정비·변경 계획은 과거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및 협의의견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표로 제시
 - 개별사업이 환경영향평가(전략·소규모 등 포함)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협의 관련 현황(진행경과 등)을 제시
-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상 영향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안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개발계획 수립
- 부산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낙동강하구) 및 국립·지질공원 등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의미
-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의 [별표 1] 과 [별표 2] 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대상지역에 생태 및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본 계획은 부산 전역의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정책계획인 만큼 개별 사업의 추진 필요성뿐 아니라 토지이용 및 입지 적정성, 개발사업의 공간적 집중·분산에 따른 누적영향과 난개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보다 보전 및 기존 개발지 활용을 우선하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개별사업별 환경영향뿐 아니라 전체 관광개발계획이 부산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지 계획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개발은 건축물 조성, 교통수요 증가, 에너지 소비, 야간조명, 폐기물 발생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산림·습지·하구 등 탄소흡수·저장 기능을 가진 자연환경을 훼손할 경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별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개발에 따른 교통·에너지 수요와 자연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 변화까지 함께 평가하여야 함.
- 부산은 해안·하구·하천을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이 다수 계획되어 있으므로 탄소배출 저감뿐 아니라 폭염, 집중호우, 태풍, 침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험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도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함.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광시설이 미래 기후위험을 높이지 않는지, 재해취약지역에 새로운 시설과 이용객을 집중시키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탄소배출 회피, 자연 탄소흡수원 보전, 에너지·교통 배출 최소화, 기후재난 적응의 원칙을 계획 및 사업선정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제시된 체계로 작성하여야 함.
- 지역별 균형있는 관광개발과 인접 지자체 연계를 강화, 체류·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 관련계획(부산시 도시·관광 관련 계획,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등)과의 부합성 또는 연계성,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회피를 우선적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개발규모 축소, 기존시설활용 및 저영향 방식 적용 등 구체적인 보전 및 관리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신규 개발 최소화, 기존 개발지·유휴공간 우선 활용, 환경민감지역 보전 등을 구체적인 환경보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배출최소화’ 만으로는 계획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판단기준이 필요함.
-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신규 배출 최소화, 대중교통·보행 중심의 관광 이동체계 구축, 건축·시설물의 에너지 수요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 산림·습지·하구 등 주요 탄소흡수·저장공간의 훼손방지, 신규 토지개발보다 기존 시설·유휴공간 활용 우선, 폭염·집중호우·태풍·침수·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험에 대한 적응력 확보 등의 사항을 환경보전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낙동강하구·낙동강 수변, 해안, 산림 등은 생물다양성 보전공간인 동시에 탄소흡수·저장과 기후재난 완충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자연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 정책을 별개로 다루지 말고 통합적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부산시 전체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실제 환경영향은 사업별 입지와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주요 사업지역과 주변 환경민감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사업 대상지만이 아니라 주변의 생태·수변·산림축 및 인접 개발사업과의 연계·누적영향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부지 중심의 평가를 넘어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재난 영향이 실제 발생하는 공간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시설의 온실가스 영향은 해당 시설만이 아니라 관광객 이동에 따른 자동차 이용, 에너지 소비 및 주변 개발 유발효과에서도 발생하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 영향권을 포함한 평가가 필요함.
-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계획지구를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관광개발로 발생하는 이동·교통 분야 배출을 고려하면 그 범위가 충분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 인접한 관광개발뿐 아니라 도시개발·도로·교량·항만개발 등과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적인 탄소배출 증가와 기후재난 위험 증가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관광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본 정책계획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관광수요 추정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는지 검토·제시하여야 함.
- 관광자원 현황 및 기능적 중복 여부, 관광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
-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환경입지건설팅제도 운영 지침의〔별표 1〕과〔별표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하는 입지가 있을 경우 제척하거나 원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38개 사업과 각종 보호 및 제한지역을 GIS 등을 활용하여 중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및 기후적응 정책과의 정합성을 별도의 선정기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신규 건축물·전망시설·해양레저시설·교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기존 시설 또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대체 가능한지 신규 토지 훼손 및 불투수면 증가를 최소화하였는지, 산림·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훼손하는지,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접근이 가능한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집중호우·폭염·태풍·침수 등에 안전한 입지인지 사업별, 단계별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생태관광이나 자연관광을 명분으로 자연지역에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은 생태계 훼손과 탄소흡수원 감소라는 이중적인 환경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규개발 보다 기존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중심 관광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안의 설정

-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중에서 환경민감지역(생태·자연도 1등급과 주요 산줄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No Action을 포함하여 타 입지 대안, 토지이용계획 대안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중 골프장이나 대규모 숙박시설이 계획된 경우 부산권에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본 계획의 추가 개발로 인한 초과 공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 계획에는 환경민감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계획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안 유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관점에서는 단순히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를 비교하는 것보다 동일한 관광정책 목표를 더 적은 탄소배출과 자연훼손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대안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흡수원 훼손 정도, 교통수요, 기후재난 노출도 등을 비교하여 최종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은 사업 확정 이후 적용하는 단순한 저감대책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별로 입지에 따른 현황, 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제시하여야 함.
- 현황조사 시 문헌 등 조사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식물 : 생태·자연도 1등급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보전 관련 용도지역 지정 현황. 환경민감지역을 포함하는 사업지의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
- 토지이용 :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의〔별표 1〕과〔별표 2〕의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표로 작성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함. 또한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이 있거나 진행 중인 계획이 있을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도면으로 작성하고,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지형지질 : 주요 산줄기 분석
- 경관 :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 및 관광자원의 분포, 지형경관 1등급 지정 현황
- 평가항목에는 해양환경이 포함되어 있으나, 환경현황 조사계획에는 해양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이용현황 및 관련 도시계획 등을 중첩하여 개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추진될 38개 관광사업을 포함하는 만큼 법령과 정책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계획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음.
- 기상항목은 최근 10년의 기상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기상자료만으로는 향후 계획기간의 기후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반영해 폭염·극한강수·태풍·침수·해수면 상승 등 여러 기후위험을 평가하고 사업별 취약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하천·하구·해안지역 관광시설의 경우 현재 수질이나 해양환경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침수·해안재해 위험이 증가했을 때에도 입지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대상지역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시 동 계획에 따른 환경상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 검토 과정에서 해당 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본 심의의견 미반영시 그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개별 사업 진행 시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람.
- 다수 관광개발사업이 동일 권역에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누적적인 환경 영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관광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안·수변·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점적 개발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별 개발가능성 평가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개발을 집중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는 공간적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원형보전 방안 등을 강구하고, 해당사업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환경(야생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지속가능관광’을 주요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평가준비서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이동 편의성이나 관광경험, 주민 수용성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부족함.
- 관광시설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 대중교통·보행을 통한 관광지 접근 비율, 자연지역 신규 훼손면적, 산림·습지·녹지 등 탄소흡수원 보전면적, 기후재난 취약지역 신규 개발 여부 등의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광정책은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부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의 정합성을 명시적으로 검토하고, 상충하는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부산권의 변화된 정책환경을 고려한 관광개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서 사업전반에 있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관계 법령 및 상위계획,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3. 토지이용구상안

- 평가준비서에 따름

4. 대안의 설정

- 효율적인 지역관광 진흥이 가능한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은 평가준비서에 따름
- 현황조사 시 문헌 등 조사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기타

- 개별 사업 진행 시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람
- 상기 사업은 부산시 전역이 대상이며,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원형보전방안 등을 강구하고, 해당사업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환경(야생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026. 9. 16.

심의위원 : 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1별지 제2.8호서식 : 제3호 제3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서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 총괄의견

○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부산시 전역 대상으로 지역 편중됨이 없어 설정 필요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관광개발 계획임으로 생태 및 경관 등의 부분에 적절한 검토 필요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5. 심층평가 대상여부

-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함고)

- 없음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2026. 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김

(인)

부산광역시 생태지질팀장 한 ○ ○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김 ○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 계획의 기본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발 대상지역에 생태 및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입지회피를 우선적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발규모 축소, 기준시설활용 및 저영향 방식 적용 등 구체적인 보전 및 관리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부산시 전체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실제 환경영향은 사업별 입지와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주요 사업지역과 주변 환경민감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토지이용구상안

- 38개 사업과 각종 보호 및 제한지역을 GIS 등을 활용하여 중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대안의 설정

- No action과 Action 간의 비교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안 비교가 너무 단순함. 본 계획에는 환경민감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계획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안 유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에는 해양환경이 포함되어 있으나, 환경영향 조사계획에는 해양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

- 다수 관광개발사업이 동일 권역에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누적적인 환경영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2026. 9. 15.

협의회 위원 :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서면심의 의견서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부산 전역의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정책계획인 만큼, 개발 사업의 추진 필요성뿐 아니라 토지이용 및 입지 적정성, 개발사업의 공간적 집중·분산에 따른 누적영향과 난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보다 보전 및 기존 개발지 활용을 우선하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신규 개발 최소화, 기존 개발지·유휴공간 우선 활용, 환경민감지역 보전 등을 구체적인 환경보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개발 사업 대상지만이 아니라 주변의 생태·수변·산림축 및 인접 개발사업과의 연계·누적영향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토지이용구상안

- 38개 사업별로 한 토지이용, 용도지역, 기존 개발계획과의 중첩 여부 및 환경적 민감도를 제시하고, 이를 중첩하여 입지 적정성을 공간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는 도면 또는 GIS 분석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대안의 설정

- 현재의 계획수립(Action)/미수립(No Action) 비교에 더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모·개발방식의 대안 및 기존 개발지 활용 대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준비서는 입지 자체도 대안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평가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현재 문헌자료 중심의 정성평가에서 한 단계 보완하여,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이용현황 및 관련 도시계획 등을 중첩하여 개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준비서도 한 단계에서는 세부계획이 부족하여 정성적 평가를 계획하고 있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

- 관광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안·수변·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점적 개발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별 개발가능성 평가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개발을 집중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는 공간적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2026. 9. 10.

협의회 위원 : 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이 ○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 ○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개별사업별 환경영향뿐 아니라 전체 관광개발계획이 부산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에 부합하는지 계획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개발은 건축물 조성, 교통수요 증가, 에너지 소비, 야간조명, 폐기물 발생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산림·습지·하구 등 탄소흡수·저장 기능을 가진 자연환경을 훼손할 경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별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개발에 따른 교통·에너지 수요와 자연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 변화까지 함께 평가하여야 함. ○ 또한 부산은 해안·하구·하천을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이 다수 계획되어 있으므로 탄소배출 저감뿐 아니라 폭염, 집중호우, 태풍, 침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험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도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함.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광시설이 미래 기후위험을 높이지 않는지, 재해취약지역에 새로운 시설과 이용객을 집중시키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탄소배출 회피, 자연 탄소흡수원 보전, 에너지·교통 배출 최소화, 기후재난 적응의 원칙을 계획 및 사업실정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배출 최소화’ 만으로는 계획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판단기준이 필요함. ○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신규 배출 최소화, 대중교통·보행 중심의 관광 이동체계 구축, 건축·시설물의 에너지 수요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 산림·습지·하구 등 주요 탄소흡수·저장 공간의 훼손 방지, 신규 토지개발보다 기존 시설·유풍공간 활용 우선, 폭염·집중호우·태풍·침수·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험에 대한 적응력 확보 등의 사항을 환경보전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낙동강하구·낙동강 수변, 해안, 산림 등은 생물다양성 보전공간인 동시에 탄소흡수·저장과 기후재난 완충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자연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 정책을 별개로 다루지 말고 통합적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부지 중심의 평가를 넘어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재난 영향이 실제 발생하는 공	간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시설의 온실가스 영향은 해당 시설만이 아니라 관광객 이동에 따른 자동차 이용, 에너지 소비 및 주변 개발 유발효과에서도 발생하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 영향권을 포함한 평가가 필요함. ○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계획지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관광개발로 발생하는 이동·교통 분야 배출을 고려하면 그 범위가 충분하지 제검토가 필요함. ○ 인접한 관광개발뿐 아니라 도시개발·도로·교량·항만개발 등과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적인 탄소배출 증가와 기후재난 위험 증가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 (3) 토지이용구상안 ○ 탄소중립 및 기후적응 정책과의 정합성을 별도의 선정기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신규 건축물·전망시설·해양레저시설·교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기존 시설 또는 유풍공간 활용으로 대체 가능한지, 신규 토지 훼손 및 불투수면 증가를 최소화하였는지, 산림·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훼손하는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자동차 교통량과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접근이 가능한지,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전력·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집중호우·폭염·태풍·침수 등에 안전한 입지인지 사업별, 단계별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생태관광이나 자연관광을 명분으로 자연지역에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은 생태계 훼손과 탄소흡수원 감소라는 이중적인 환경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규개발보다 기존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중심 관광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안의 설정 ○ 탄소중립 관점에서는 단순히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를 비교하는 것보다 동일한 관광정책 목표를 더 적은 탄소배출과 자연훼손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대안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흡수원 훼손 정도, 교통수요, 기후재난 노출도 등을 비교하여 최종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은 사업 확정 이후 적용하는 단순한 저감대책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본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추진될 38개 관광사업을 포함하는 만큼, 법령과 정책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계획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음. ○ 기상상목은 최근 10년의 기상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기상자료만으로는 향후 계획기간의 기후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노 ○ ○ 전망을 반영해 폭염·극한강수·태풍·침수·해수면 상승 등 여러 기후위험을 평가하고 사업별 취약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하천·하구·해안지역 관광시설의 경우 현재 수질이나 해양환경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침수·해안재해 위험이 증가했을 때에도 입지가 타당하지 검토해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 ○ ‘지속가능관광’을 주요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평가준비서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이동 편의성이나 관광경험, 주민 수용성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부족함. ○ 관광시설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 대중교통·보행을 통한 관광지 접근 비율, 자연지역 신규 훼손면적, 산림·습지·녹지 등 탄소흡수원 보전면적, 기후재난 취약지역 신규개발 여부 등의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광정책은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부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의 정합성을 명시적으로 검토하고, 상충하는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6. 9. 16. 협의회 위원 : 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지역별 균형있는 관광개발과 인접 지자체 연계를 강화, 체류·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보행 접근성과 주변 관광지 연계 강화 필요 4. 대안 ○ 의견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2026. 9. 16. 심의위원 조  (인)
부산환경운동연합 노 ○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조 ○ ○